수시연구 2017-03

대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개선방안

이 범 규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 • 이범규 / 도시기반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수시연구 2017-03

대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개선방안

발행일 2017년 8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042-530-00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자치특별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차 례

1장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10

2장 교통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문제점 ····· 11
1. 교통영향평가 추진실적 ····· 13
2.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미흡한 점 ····· 15

3장 대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개선방안 ····· 17
1. 교통영향평가 심의 위원회 구분 방안 ····· 19
1) 도시개발사업의 심의 ····· 19
2) 건축물의 심의 ····· 19
2.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 개선방안 ····· 24

부 록 ····· 27
1. 대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실적(2009~2016) ····· 27
2. 대전시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 심의실적(2009~2016) ····· 36

참고문헌 ····· 39

표 차례

[표 1-1] 교통영향평가제도 연혁 ····· 4
[표 1-2] 교통영향평가 관련 법규 및 지침 ····· 5
[표 1-3] 대전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규모(개발사업/부지면적) ····· 6
[표 1-4] 대전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규모(건축물/건축연면적) ····· 7

[표 2-1] 대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추이 ····· 13
[표 2-2] 대전시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 추이 ····· 13
[표 2-3] 대전시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심의 추이 ····· 14

[표 3-1] 대전시 건축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안) ····· 22

그림 차례

[그림 1-1] 대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유형별 차이 ····· 9

[그림 3-1]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소관위원회 구분 체계 ····· 20
[그림 3-2] 사업부지와 접해 있는 보도 경사 발생 ····· 24

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개발사업,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각종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1987년 4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정으로 제도 도입

※ 법적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명시되어 있어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도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대전시 :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교통영향평가는 1996년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2009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축소), 2016년 교통영향평가로 환원됨

[표 1-1] 교통영향평가제도 연혁

구 분	내 용
1987. 04	**- 교통영향평가제도 도입(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정)**
1996. 06	**-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1997. 05	**-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정·운영**
2001. 01	**- 교통영향평가제도를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통합 시행** (승인기관장의 평가서 접수 등 평가절차 개선 대규모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제도 도입, 도시 교통정비지역 내외 구분 없이 평가대상 규모 일원화)
2009. 01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으로 환원** **- 교통영향평가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명칭 변경** **-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 축소** (전국 →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 심의방법 변경** (교통영향심의위원회 → 승인관청 소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2016. 01	**- 교통영향평가로 명칭 환원** **-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 및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 도입**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사업이라도 별도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료 : 교통영향 평가자료 D/B시스템 (http://tia.molit.go.kr)

[표 1-2] 교통영향평가 관련 법규 및 지침

구 분	주 요 내 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그 범위를 규정** [별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교통영향평가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 제2장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제3장 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 등 제4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등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내용 항목 [별표 2]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의 제반 문제점 도출 및 교통개선대책수립 내용 [별표 3] 대상사업별 중점 분석 항목

[표 1-3] 대전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규모(개발사업/부지면적)

구 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대전시 조례)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0,000㎡ 이상(100,000㎡)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50,000㎡ 이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총길이 2.5㎞(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건축 연면적 7,500㎡(15,000㎡) 이상 또는 부지면적 27,500㎡(55,000㎡) 이상
	다) 공원	150,000㎡(300,000㎡) 이상
	라) 유원지	70,0005천㎡(150,000㎡) 이상
	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50,000㎡(100,000㎡) 이상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50,000㎡(100,000㎡) 이상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25,000㎡(50,000㎡) 이상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12,500㎡(25,000㎡) 이상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50,000㎡(100,000㎡) 이상
	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100,000㎡ 이상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25,000㎡ (250,000㎡) 이상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100,000㎡(200,000㎡) 이상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100,000㎡(200,000㎡) 이상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 제외)	1,500,000㎡(3,000,000㎡) 이상
라.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	연간 하역능력 1,500,000톤 이상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총길이 2.5㎞(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바. 철도의 건설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5㎞ 이상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3㎞ 이상
사. 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연간 여객처리능력 30만 명 이상
아.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시설계획 면적 25,000㎡(50,000㎡) 이상 또는 부지면적 250,000㎡(500,000㎡) 이상
	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부지면적 50,000㎡(100,000㎡) 이상
자. 특정지역의 개발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100,000㎡ 이상
차. 체육시설의 설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만 해당	150,000㎡ 이상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150,000㎡ 이상
	3)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150,000㎡ 이상
카.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	해당 사업 또는 시설 규모 이상

자료 :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 ( )는 도촉법상의 대상규모

[표 1-4] 대전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규모(건축물/건축연면적)

주용도	세부용도	규 모 (대전시 조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1) 공동주택	아파트	36,000㎡ 이상	60,000㎡ 이상	90,000㎡ 이상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한의원	15,000㎡ 이상	25,000㎡ 이상	37,500㎡ 이상
	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	11,000㎡ 이상	12,000㎡ 이상	18,000㎡ 이상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9,000㎡ 이상	15,000㎡ 이상	22,500㎡ 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7,500㎡ 이상	15,000㎡ 이상	22,500㎡ 이상
	예식장	2,300㎡ 이상	3,000㎡ 이상	4,500㎡ 이상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15,000㎡ 이상	22,500㎡ 이상
	동·식물원	18,000㎡ 이상	부지면적 20,000㎡ 이상	부지면적 30,000㎡ 이상
5)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10,000㎡ 이상	15,000㎡ 이상	22,500㎡ 이상
6) 판매시설	도매시장	6,500㎡ 이상	13,000㎡ 이상	19,500㎡ 이상
	상점	5,500㎡ 이상	11,000㎡ 이상	16,500㎡ 이상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4,700㎡ 이상	6,000㎡ 이상	9,000㎡ 이상
7)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000㎡ 이상	11,000㎡ 이상	16,500㎡ 이상
8)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12,500㎡ 이상	25,000㎡ 이상	37,500㎡ 이상
9) 교육연구시설	대학, 대학교	50,000㎡ 이상	100,000㎡ 이상	150,000㎡ 이상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30,000㎡ 이상	37,000㎡ 이상	55,500㎡ 이상
10)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제외)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7,000㎡ 이상 관람석 1,500석 이상	10,000㎡ 이상 관람석 2천석이상	15,000㎡ 이상 관람석 3천석이상
11)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6,000㎡ 이상	7,000㎡ 이상	10,500㎡ 이상
	일반업무시설	20,000㎡ 이상	25,000㎡ 이상	37,500㎡ 이상
12) 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29,000㎡ 이상	40,000㎡ 이상	60,000㎡ 이상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제외)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000㎡ 이상	16,500㎡ 이상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6,000㎡ 이상	9,000㎡ 이상
14) 공장			75,000㎡ 이상	112,500㎡ 이상
15) 창고시설	창고,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55,000㎡ 이상	82,500㎡ 이상
	하역장		부지면적 55,000㎡ 이상	부지면적 82,500㎡ 이상
16) 자동차 관련 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10,000㎡ 이상	13,000㎡ 이상	19,500㎡ 이상
	매매장	20,000㎡ 이상	25,000㎡ 이상	37,500㎡ 이상
17)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외)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29,000㎡ 이상	43,000㎡ 이상	64,500㎡ 이상
18)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 건조장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부지면적 12,000㎡ 이상	부지면적 18,000㎡ 이상
19)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10,000㎡ 이상	15,000㎡ 이상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30,000㎡ 이상	45,000㎡ 이상
20) 장례시설	장례식장,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6,000㎡ 이상	9,000㎡ 이상

자료 :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2개의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음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개발사업

- 건축위원회(¼ 이상 교통분야 전문가 구성) : 건축물 ←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

※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되거나 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음(2015년 7월 개정)

※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는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전, 건축사업은 건축인·허가 전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13조 및 별표 1에 세부적으로 명시

○ 교통영향평가 이행 절차는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청에 심의요청**을 하면 **해당 관청에서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와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 심의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교통정책과**에서 주관하며, 건축·교통통합심의는 **주택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음
- 사전 검토시 건축·교통통합심의는 해당구청(교통과, 건설과, 건축과)과 대전시 관련부서(교통정책과, 건설도로과, 운송주차과, 버스정책과, 주택정책과, 도시계획과)만의 의견을 수렴하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해당 위원의 의견을 함께 수렴함**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시에는 **교통분야 심의위원**만 참석하나,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 개최 시에는 **건축분야 및 교통분야 심의위원**(¼ 이상)이 참석함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심의사항 등) ① 시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 중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및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21층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그림 1-1] 대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유형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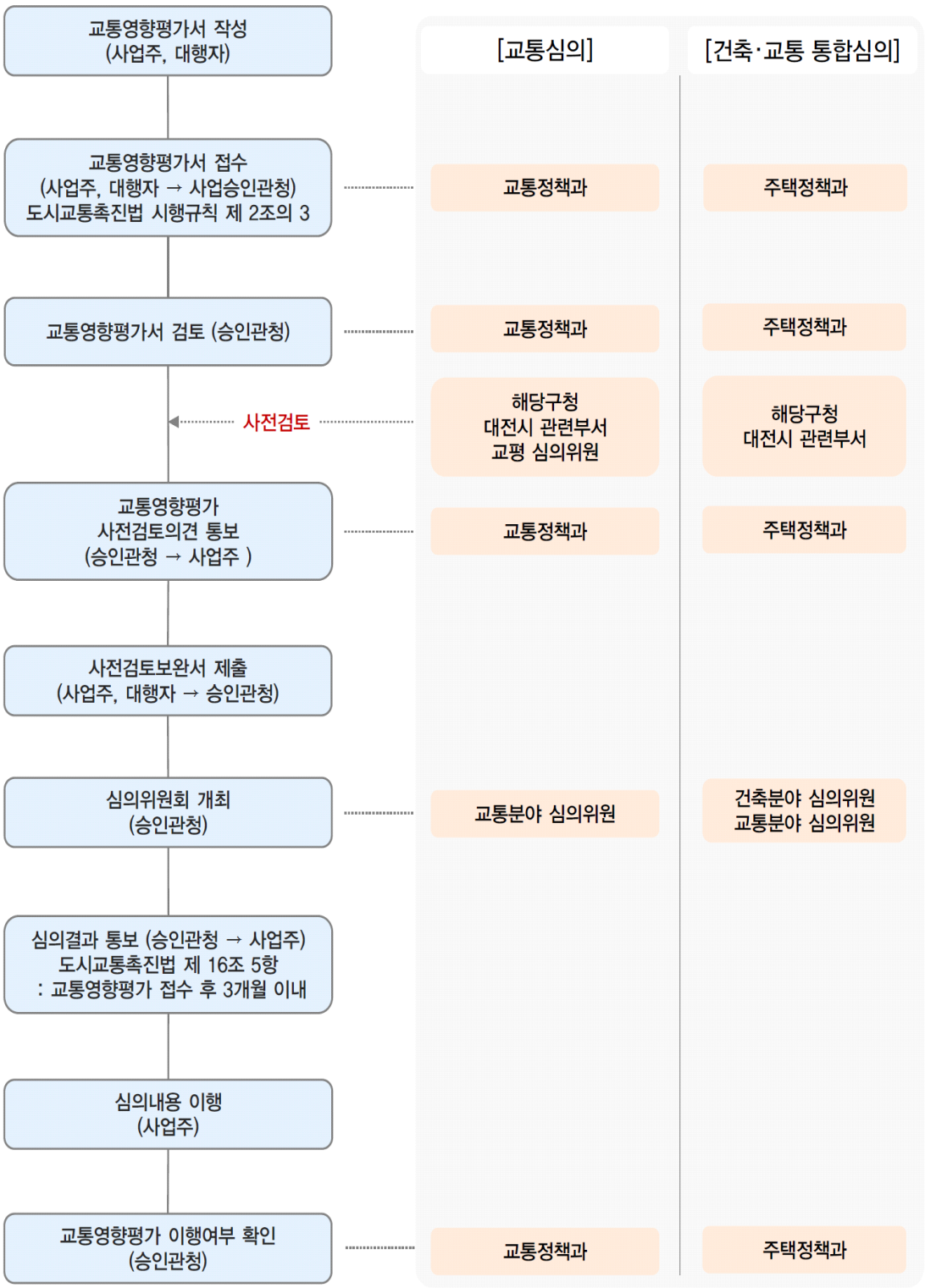

자료 : 교통영향평가자료 DB시스템(https://tia.molit.go.kr) 및 대전시 내부자료

2. 연구의 목적

○ 건축사업의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 심의의 경우 개발사업을 심의하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각종 교통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다는 인식 팽배

○ 본 연구는 대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따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나아가 교통영향평가의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음

2장

교통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미흡한 점

1. 교통영향평가 추진실적
2.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미흡한 점

2장 교통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미흡한 점

1. 교통영향평가 추진실적

○ 2009년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와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로 분리된 이후 심의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2016년 최근 실적을 보면 각각 16건, 15건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 대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41	26	32	19	15	19	28	16
건축·교통통합심의 위원회	2	2	7	6	3	12	13	15
계	43	28	39	25	18	31	41	31

자료 : 대전시 내부자료

○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기타 사업 모두 유사한 수준이며, 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최근 들어 10건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 대전시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도시개발사업	7	4	8	1	-	3	6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10	4	5	2	1	3	3	5
기 타	9	4	3	5	3	3	6	4
계	26	12	16	8	4	9	15	10

자료 : 대전시 내부자료

○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최근 년도에 약 20건 조금 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주택과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심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 대전시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심의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공동주택	2	3	4	-	2	5	8	6
근린생활시설	-	-	-	1	-	-	2	1
문화 및 집회시설 (예식장, 전시장)	2	-	1	-	-	-	2	1
종교시설	-	-	1	-	-	-	-	2
판매시설(도매시장, 상점,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1	2	3	6	-	3	3	1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	1	-	2	2	2	2	2
교육연구시설	6	7	6	3	5	7	5	4
운동시설	-	-	1	-	-	-	-	-
업무시설	2	1	1	4	2	1	2	2
공 장	-	-	-	-	-	2	1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매매장)	1	-	3	0	0	1	0	1
기 타	3	2	3	1	4	1	1	1
계	17	16	23	17	14	22	26	21

자료 : 대전시 내부자료

2.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미흡한 점

○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1987년 만들어진 이후로 각종 사업으로 인한 교통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있어 많은 기여를 함

- 교통영향평가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지역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교통 안전성 확보,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영향 최소화, 주창장 확보, 대중교통 및 보행시설 확보 등을 통해 시설물 이용자와 지역민에게 많은 편익을 준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사업기간 및 비용 증가 등으로 2000년대 초에는 규제개혁 대상으로 인식되어 명칭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변경되고, 건축심의 대상사업은 건축·교통통합심의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기도 함

○ 2016년 교통영향평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다시 명칭이 교통영향평가로 환원되었고,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심층적인 교통분야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

○ 교통영향평가로 인한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업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건축물은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인식 하에서 대전시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몇 가지 미흡한 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나 일부 사업에 경우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50,000㎡ 이상(이하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서울시의 경우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을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오다가 2016년 국토교통부와 법률 재검토를 통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추진

- **둘째, 교통유발량이 많은 대형 건축물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으나, 대전시 조례에서는 이에 대해 아직 명시하지 않고 있음**

※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 심의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다 사업으로 인한 각종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에 한계가 있으며, 실제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진출입 체계, 주차장 확보 등 교통대책의 내용이 다소 미흡한 사례가 나타남

※ 서울시의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및 주용도가 교통시설(환승센터, 주차장 등)인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함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는 법 제17조에 따라서 심의를 거친다. 단,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 중 영 제13조의2제3항의 별표1의 대상사업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 중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개발사업 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단, 주용도가 교통시설인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다.

- 셋째, 보도구간의 재질, 보도구간의 횡단구배(경사),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시설 설계, 택배차량 등의 조업주차공간 확보(설치유모, 위치, 규모 등) 등의 대책에 대해서는 검토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3장

대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개선방안

1. 교통영향평가 심의 위원회 구분 방안
2.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 개선방안

3장 대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개선방안

1. 교통영향평가 심의 위원회 구분 방안

1) 도시개발사업의 심의

□ 부지 50,000㎡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

○ 개발사업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은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도시재개발사업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나 그동안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짐

○ 따라서 이들 사업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50,000㎡ 이상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50,000㎡ 이상의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건축 관련 사항은 별도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받도록 조치**

2) 건축물의 심의

○ 현행법상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가 아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 승인관청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되거나 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추진 필요

○ 대전시는 아직 건축물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치거나,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1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주용도가 교통시설(환승센터, 주차장 등)인 건축물, 그리고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2017.3.23.)**

- 부산 등 타 광역시 경우 2017년 7월 현재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음

[그림 3-1]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소관위원회 구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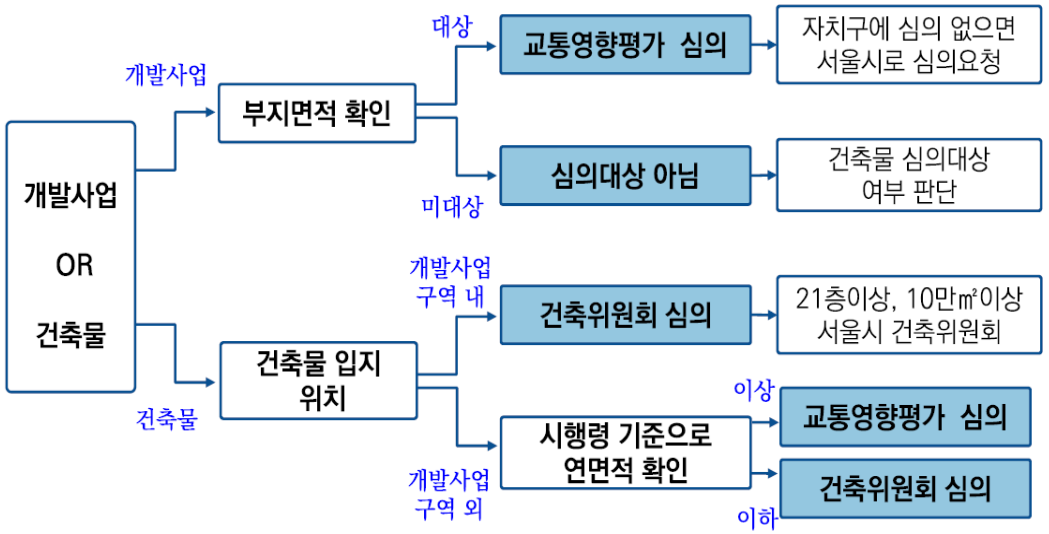

※ 초고층(50층 이상) 건축물과 주용도가 교통시설인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2017년 7월 18일 통과 → 2018년 1월부터 시행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교통영향평가는 반드시 승인관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는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질 예정
- 일명 엘씨티 방지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대형 건축물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음

BUSAN.com 부산일보

부산 '교통 지옥' 일조 부실 교통영향평가 내실화

게재 : 2017-07-19 (5면)

부산의 엘시티와 해운대 센텀시티 일대 등 도심 내 '교통 지옥'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돼온 '부실 교통영향평가'가 내실화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해양수산부 장관)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통과시켰다.

김영춘 발의 법안 통과 "지자체 심의 꼭 거쳐야"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교통영향평가는 반드시 승인관청, 즉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의 심의 대상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다.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가 교통영향평가까지 심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통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운영 목적 자체가 건축에 방점에 찍힌 건축위원회가 교통영향평가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교통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심의됐다고 알려진 부산 해운대의 '엘시티'와 기장군의' 롯데몰', '신세계 센텀시티몰' 주변은 건물이 들어선 이후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됐다.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실제 교통량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예측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애초에 부산의 대표적인 난개발 사업으로 불린 엘시티 사업에서 비롯됐기에 '엘시티 방지법'으로도 불렸던 법이 통과됨에 따라 무분별한 건축 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산시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춘 장관은 "무조건 짓고 보자는 난개발 정책과 시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사업자 위주의 행정 마인드로 인해 부산 시민들의 불편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이 법과 함께 발의했던 환경영향평가법까지 통과시켜 부산의 각종 건축이나 개발이 진짜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

○ **대전시의 경우에도 교통유발량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에 주변지역에 크게 나타나므로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그러나,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기간 다소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실제 2000년대 초에 이러한 이유로 건축·교통통합심의제도가 만들어진바 있으므로 교통유발량이 많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 교통문제를 심각하게 초래할 소지가 있는 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① 교통유발량이 많은 6개 시설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등, 예식장),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장례시설

※ 부지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경우 진출입 동선, 내부 및 주차장 동선, 보행 및 주차문제 등 검토해야 할 교통대책의 내용이 많고 범위가 넓으므로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음

- 건축물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 서울시와 동일

[표 3-1] 대전시 건축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안)

주용도	세부용도	심의 대상 규모
공동주택	아파트	60,000㎡ 이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15,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 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15,000㎡ 이상
	예식장	3,000㎡ 이상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15,000㎡ 이상
판매시설	도매시장	13,000㎡ 이상
	상점	11,000㎡ 이상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6,000㎡ 이상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11,000㎡ 이상
장례시설	장례식장,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6,000㎡ 이상

② 개발사업지 내의 개별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실시

○ 현행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특구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개별 공동주택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 1]**
>
> 비 고
>
> 5. 교통영향평가의 특례 사항
>
> 라. 위 표 제1호가목 2)·4)·5)·9)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자목3)·4)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 택지개발사업 등과 같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공간적 범위가 너무 넓어 심도 있는 검토에 한계가 있음

○ 이로 인한 공동주택 시설의 실질적인 진출입구 위치 불량, 차량 및 보행자 동선 불합리, 주차장 진출입 동선 불량 등의 문제 발생

○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개발사업지 내에 개별 공동주택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이행시 개별건축물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이행을 조건으로 정하여 추진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조치 필요

※ 현행법상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 필요

2.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 개선방안

□ 사업지와 접해 있는 보도의 횡단경사 검토

○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사업지와 접해 있는 보도의 폭, 안전시설 설치 등 평면적인 검토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도의 경사 등 입체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음

○ 실제 사업 완료후 보도의 급한 경사가 발생하여 이용객의 보행불편 발생

○ **교통영향평가서에도 보도의 경사 표시는 없는 실정으로 사업지와 도로의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검토 필요**

[그림 3-2] 사업부지와 접해 있는 보도 경사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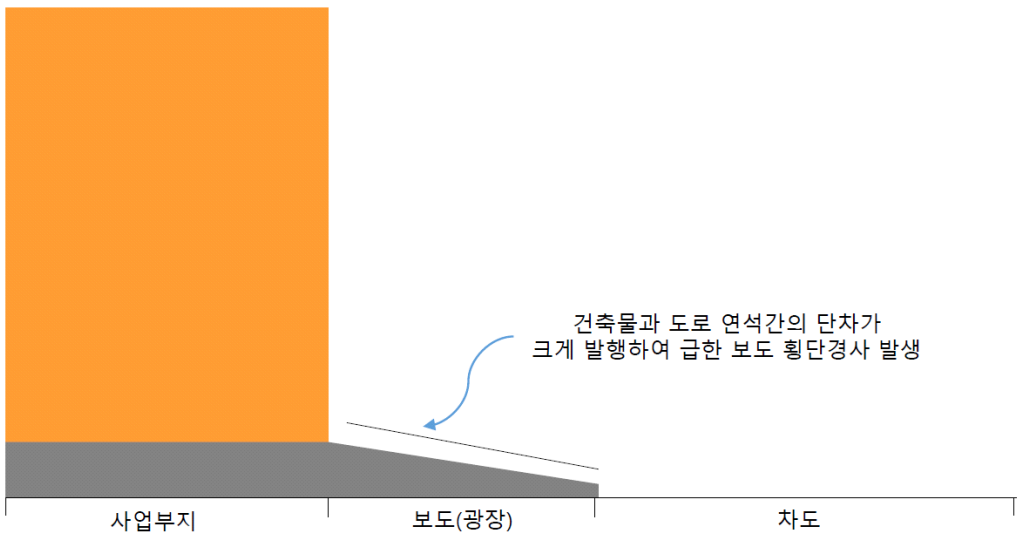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의 횡단경사 값은 교통약자의 통행안전을 위하여 2% 이하의 값을 취하도록 한다. 다만, 지형상황이나 시가지 등에서 기존 건축물의 출입 등 특별한 경우에는 4%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보도의 횡단경사는 25분의 1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 및 휠체어 이용자 등의 통행 안전을 위하는 경우에는 50분 의 1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업지내 화물차조업주차장 설치 검토

○ 대부분 사업지내 화물차조업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아 인접 도로에 불법정차 후 조업활동을 함에 따라 주변 도로 교통혼잡 및 교통안전문제 발생

- 인접 도로에 정차하지 않더라도 사업지내 주차장이 아닌 곳에 정차함에 따라 교통혼잡 발생

○ 화물 운송에 따른 가로변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화물차조업주차장 설치 필요

○ **화물차조업주차장 설치는 현재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주차장 중 일부를 화물차조업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화물차조업주차장은 지상 주차장 또는 지하 1층 주차장 중 건물입구와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
- 서울시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에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 명시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별표 2] 9. 주차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⑯ 조업차량이 유발되는 판매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기타 근린생활시설 등에는 조업주차면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시 서울시의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조업주차면 설치위치

㈏ 조업주차면 적정 설치규모

㈐ 조업주차 진·출입을 감안한 최소회전반경 크기

㈑ 조업주차 진·출입을 감안한 최소 통과높이

㈒ 조업주차 진·출입을 감안한 램프 폭원

□ 교통약자(장애인) 접근로의 적정성 검토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법적인 사항으로 충분히 설치되고 있으며, 설치위치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출입구까지 접근 동선이 다소 불량한 사례가 있으므로 **접근 동선 상의 접근로 설치여부, 접근로 폭원, 턱낮춤, 장애요인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 필요

□ 주차안내(유도)시스템 설치 검토

○ 주차수요가 많은 시설의 경우 이용자들이 빈 주차장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주차장 진입 대기행렬이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함

- 특히 주차장 내 차량동선이 불량한 경우 주차장 혼잡 가중

○ **판매시설, 병원시설 등 주차장 혼잡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와 주차장 혼잡 완화를 위하여 주차안내(유도) 시스템 설치 유도**

- 주차가능대수 표시판, 주차가능 구획 표시, 차량 진출입 유도표시 등

부 록

1. 대전시 교통영향평가심위원회 심의실적(2009～2016)

구 분		사업명	위 치	대지면적(㎡)	연면적(㎡)
2009	1	선화.용두지구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선화.용두.목동	739,277.00	
	2	괴정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신규)	괴정동	89,062.00	237,019.25
	3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경매장 지하냉동창고 확장	오정동	63,088.50	34,888.96
	4	천동3 주거환경개선사업	천동	163,094.00	
	5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		887,000.00	
	6	둔산경찰서 부설주차장 증축	둔산동	10,750.30	11,321.49
	7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죽동,방현동,신성동	1,518,202.00	
	8	대덕구 읍내동 아파트 신축	읍내동	53,781.21	139,225.28
	9	천동3 주거환경개선사업	천동	163,094.00	
	10	도마.변동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도마,변동,정림동,가장동	2,219,100.00	
	11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		887,000.00	
	12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성남동	117,147.00	
	13	상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상서동	159,527.00	
	14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		887,000.00	
	15	도마.변동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도마,변동,정림동,가장동	2,219,100.00	
	16	정부 대전청사 증축(중간기록관리실)	둔산동	518,337.90	241,003.29
	17	유성종합터미널 도시개발사업	구암동	102,080.00	
	18	유성종합터미널 도시개발사업	구암동	102,080.00	241,003.29
	1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증축(UST동)	가정동,도룡동	493,023.70	60,020.45
	20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	대흥.신흥.용운판암동일원	678,794.00	
	21	계룡건설산업 사옥 용도변경	월평동	2,352.80	24,870.13
	22	한국과학기술원 캠퍼스 시설증축	어은동	1,140,538.10	492,450.54
	23	대전 복합터미널 신축	용전동	35,678.70	110,221.00

자료:대전시내부자료

구 분		사업명	위 치	대지면적(㎡)	연면적(㎡)
2009	24	봉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주택부문포함)	봉산동	85,522.59	221,079.79
	25	대전 복합터미널 신축	용전동	35,264.90	111,969.00
	26	선화동 초고층아파트 신축	선화동	7,249.04	83,632.96
	27	국립중앙과학관 증축	구성동	176,232.40	40,028.78
	2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증축(융합기술생산센터)	가정동	343,221.70	158,807.09
	29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	대흥,신흥,용운,판암동일원	678,794.00	
	3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증축(융합기술생산센터)	가정동	343,221.70	158,807.09
	31	남대전종합물류단지 개발사업	구도,낭월동 일원	559,860.00	83,632.96
	32	유성 봉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봉명동 일원	804,052.10	
	33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소 증축공사	장동	96,445.10	53,727.04
	34	유성 봉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봉명동 일원	804,052.10	
	35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죽,신성,방현동	1,474,206.00	
	36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사동	150,120.20	
	37	목원대학교증축	도안동	309,884.00	151,940.27
	38	복수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복수동	44,612.00	130,221.99
	39	중리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리동	1,049,540.00	
	40	우송 솔브릿지 별관동 증축사업	삼성동	14,297.70	47,101.95
	41	남대전종합물류단지 개발사업	구도,낭월동 일원	559,860.00	83,632.96
2010	42	대전 노은4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족동	229,371.00	
	43	문화동 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문화동	110,661.00	
	44	한남대학교시설증축	오정동	370,870.00	
	45	SK대덕기술원 증축	원촌동	410,945.30	
	46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사동	150,120.20	
	47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사동	150,122.20	
	48	건양대학교 대전캠퍼스 증축	가수원동	126,015.00	

자료 : 대전시 내부자료

구 분		사업명	위 치	대지면적(㎡)	연면적(㎡)
2010	49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평, 용산, 탑립, 송강동	4,270,055.90	
	50	문화동 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문화동	110,661.00	
	51	문지지구 개발사업	문지동	299,640.00	
	52	동기 봉명동 포에버 주상복합신축	봉명동	5,048.90	
	53	충남대학교 보운캠퍼스 증축(부속병원 신축)	문화동	95,352.00	
	54	문지지구 개발사업	문지동	294,393.00	
	55	충남대학교 보운캠퍼스 증축(부속병원 신축)	문화동	95,352.00	
	56	가수원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가수원동	377,452.40	
	57	판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판암동	108,784.00	
	58	대전 대신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신축	대동	55,680.00	173,713.20
	59	대전 구성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신축	성남동	52,851.40	162,731.30
	60	신협중앙회 설계변경	둔산동	4,916.80	28,649.00
	61	충남대학교 병원 대전지역 암센터 신축	대사동	67,596.00	104,147.00
	62	대전 도룡중심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도룡동	1,444,292.00	
	63	오정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공사	오정동	67,553.14	43,073.80
	64	한국기초과학연구원(국가핵융합연구소) 증축	어은동	100,509.30	71,594.70
	65	오정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공사	오정동	67,553.14	43,073.80
	66	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 증축	궁동	1,502,096.80	560,405.50
	67	대전 도룡중심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도룡동	1,444,292.00	
2011	68	유성구 봉명동 ○○예식장 신축	봉명동 일원	4,139.20	6,085.51
	69	롯데마트 서대전점 증축	원내동	28,993.00	25,618.00
	70	한진택배 대전터미널 증축	대정동	47,218.60	29,408.84
	71	대전 성모병원 부설주차장 신축	대흥동	17,291.80	54,294.80
	72	대전 중구 용두동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용두동	35,601.00	116,448.15

자료 : 대전시 내부자료

구 분		사업명	위 치	대지면적(㎡)	연면적(㎡)
2011	73	롯데마트 서대전점 증축	원내동	28,993.00	25,618.00
	74	대전대학교 IT공학관 증축	용운동	306,668.20	182,968.00
	75	한남대학교 시설 증축	오정동	406,657.00	197,520.00
	76	한국기계연구원 산업화연구동 건립사업	장동	337,928.00	57,791.00
	77	대덕R&D특구 1단계 개발사업	죽동	1,474,360.00	
	78	목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목동	66,093.00	
	79	대전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학하동	1,809,457.00	
	80	학하지구 제일오투그란데 신축	학하동	38,874.00	125,408.00
	81	봉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봉산동	143,700.00	
	82	국제원자력 안전학교 교육훈련동	구성동	88,849.00	39,546.00
	83	대전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학하동	1,809,457.00	
	84	국제원자력 안전학교 교육훈련동	구성동	88,849.00	39,546.00
	85	오정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오정동	1,872,365.00	
	86	대전 도룡중심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도룡동	501,153.00	
	87	사이언스타운 주상복합 신축공사	봉명동	6,026.80	71,748.40
	88	대전 복합터미널 신축공사	용전동	35,264.90	112,074.60
	89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덕명동	493,011.00	
	90	대전 노은4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족동	229,371.00	
	91	대전 도안지구 도안씨티프라자 신축공사	도안동	2,689.00	23,774.10
	92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덕명동	493,011.00	
	93	우송대학교 증축공사	자양동	415,740.20	294,179.06
	94	한밭야구장 리모델링 공사	부사동	157,777.00	73,357.00
	95	대전 서구 둔산동 주차빌딩 증축공사	둔산동	1,786.00	14,320.0
	96	구)풍한방직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석봉동	270,196.00	

자료 : 대전시 내부자료

구 분		사업명	위 치	대지면적(㎡)	연면적(㎡)
2011	97	대신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안동, 대동, 신흥동 일대	113,710.00	84,890.00
	98	사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정동	274,023.00	
	99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평촌동	276,026.00	
2012	100	서구 둔산동 명동빌딩 신축	둔산동		21,131.00
	101	한밭대학교 유성캠퍼스 증축	덕명동	281,892.70	172,765.00
	102	대전경찰청 어린이집 신축	둔산동	26,973.10	22,547.00
	100	석촌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성남동	74,748.00	148,552.00
	101	도안지구 2단계(2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안동, 가수원동	2,976,939.00	
	102	SK대덕기술원 증축공사	원촌동	61,415.00	152,351.00
	103	오정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오정동	1,872,365.00	
	104	도안지구 2단계(2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안동, 가수원동	2,976,939.00	
	105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증축	노은동	112,282.00	52,987.00
	106	행평근린공원관광벨트조성	사정동	1,881,800.00	29,582.00
	107	농협 대전유통 증축	안영동	41,393.00	21,911.00
	108	충남대학교 보운캠퍼스 증축	문화동	95,352.00	63,880.00
	109	행평근린공원관광벨트조성	사정동	1,881,800.00	29,582.00
	110	농협 대전유통 증축	안영동	41,393.00	21,911.00
	111	을지대학병원 증축 및 신축	둔산동	22,825.00	126,983.00
	112	삼성생명보험㈜대전둔산신축공사	둔산동	5,267.00	48,389.00
	113	삼성생명보험㈜대전둔산신축공사	둔산동	5,267.00	48,389.00
	114	천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천동	82,972.00	
	115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아파트 신축	대흥동	53,078.00	187,352.00
	116	대전 유성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죽동	13,469.00	8,595.00
	117	건양대학교 본관 및 도서관 신축공사	관저동	126,126.00	153,119.00
	118	을지대학병원 증축 및 신축	둔산동	22,825.00	126,983.00

자료 : 대전시 내부자료

구 분		사업명	위 치	대지면적(㎡)	연면적(㎡)
2013	119	한전원자력연료 신규부지 조성사업	덕진동	246,178.20	127,301.00
	120	LG화학 기술연구원 설계변경	문지동	286,223.90	263,054.00
	12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터복합지원동증축	어은동	63,071.20	36,864.00
	122	천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천동	82,972.70	
	123	목원대학교 기숙사 증축	도안동	347,564.50	181,037.00
	124	HD드라마타운 건립	도룡동	66,115.00	32,658.00
	125	대전보훈병원 본관등 증축 및 주차장 건립	신탄진동	41,441.00	38,313.00
	126	을지대학교병원 신축 및 증축	둔산동	10,963.00	123,117.00
	127	한국화학연구원 증축	장동	177,223.00	95,979.00
	128	HD드라마타운 건립	도룡동	66,115.00	32,657.75
	129	대전동부경찰서 청사 신축	인동	12,835.00	10,923.00
	130	유성구 봉산동 77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봉산동	95,294.00	
	131	대덕R&D특구 1단계 개발사업	죽동, 신성동, 방현동	1,474,360.00	
	132	한국타이어 Central R&D Center 신축	죽동	70,387.00	101,035.00
	133	대전동부경찰서 청사 신축	인동	12,835.20	10,968.00
2014	134	한전원자력연료 신규부지 조성사업	덕진동	243,481.20	134,742.79
	135	대전 노은4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족동	231,765.50	
	136	대전 선화, 용두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선화, 용두, 목동	193,379.00	
	137	대전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	대동, 신흥동, 용문동, 판암동	644,961.00	
	138	대전 유성선병원 시설증축	지족동	16,344.70	22,853.00
	139	AP-CV 대전공장 증축(코스비전)	대화동	89,593.00	132,892.00
	140	AP-CV 대전공장 증축(코스비전)	대화동	89,593.00	132,892.00
	141	대전 유성선병원 시설증축	지족동	16,344.70	23,789.00
	142	유성 펠리피아 주상복합 신축	봉명동	4,334.67	57,104.98
	143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증축	장동	62,898.04	37,313.56

자료 : 대전시 내부자료

구 분		사업명	위 치	대지면적(㎡)	연면적(㎡)
2014	144	한국항공우주연구원증축(직장어린이집)	어은동	242,208.20	110,376.74
	145	대덕테크노밸리 관광휴양시설 용지 세부개발계획 변경	용산동	99,690.90	101,990.06
	14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지구(둔곡,신동) 개발사업	둔곡,신동	3,445,118.00	
	147	배재대학교 중축 및 설계변경	도마동		145,616.00
	148	서구 둔산동 명동빌딩 신축	둔산동		21,131.00
	149	한밭대학교 유성캠퍼스 증축	덕명동	281,892.70	172,765.00
	150	배재대학교 중축 및 설계변경	도마동		145,616.00
	151	한밭대학교 유성캠퍼스 증축	덕명동	281,892.70	172,765.00
	152	대전경찰청 어린이집 신축	둔산동	26,973.10	22,547.00
2015	153	대덕테크노밸리 관광휴양시설 용지 세부개발계획 변경	용산동	99,690.90	101,830.00
	154	도마.변동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변경)	도마,변동,정림동,가장동	2,219,100.00	
	155	봉명동 BYC빌딩 신축 공사	봉명동		37,199.57
	156	엑스포재창조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도룡동	592,494.40	
	157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 사업	신일동	28,521.00	11,88.13
	158	대전법원 종합청사 별관 신축	둔산동	32,055.30	43,355.28
	159	도룡동 골프복합문화센터 신축	도룡동	30,379.40	36,206.24
	160	한화 방현종합연구소 신축	장동	37,033.00	50,516.00
	161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관저동	411,915.00	
	162	대전 월평동 업무시설 신축	월평동	2,219.00	27,634.68
	16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증축(노후화학동)	도룡동	500,862.00	101,430.29
	164	숭어리 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탄방동	1,402,483.00	299,260.29
	165	대전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조성	안영동	164,490.00	
	166	한밭대학교 유성캠퍼스(변경)	덕명동	281,892.70	172,765.00
	167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신탄진동	148,973.00	

자료 : 대전시 내부자료

구 분		사업명	위 치	대지면적(㎡)	연면적(㎡)
2015	168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	정,신안동	887,000.00	
	169	엑스포재창조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도룡동	592,494.40	
	170	대전 동구 대성지구도시개발사업	대성동	70,188.00	
	171	기초과학연구원 1차 본원 건립	도룡동	200,245	72,181.47
	172	대덕R&D특구 1단계 개발사업	죽,신성,방현동	1,468,371.70	
	173	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변경심의)	관저동	413,356.60	
	174	2020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상서지구]	상서동	130,652.00	
	175	2020 관리형 지구단위계획[덕명(수통골)지구]	덕명동	216,324.00	
	176	대전 유성 선병원 시설증축	노은동	16,344.70	48,123.32
	177	AP-CV 대전공장 증축	대화동	89,593.00	146,481.83
	178	건양대학교 증축(간호대학 등)	관저동	172,717.90	176,637.10
	179	장동1구역(장동욕골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장동	98,954.60	
	180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신관 증축	둔산동	5,533.00	23,667.24
2016	181	을지대학교병원 증축	둔산동	21,099.00	9,816.55
	182	생명공학연구원(국가생명연구 자원정보센터) 증축	어은동	119,783.70	59,594.76
	183	하소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	하소동	도로연장 4.56km, 10~14.5m	4.56.00
	184	LIG 테크밸리 신축공사	죽동	33,400.00	43,208.61
	185	대전 센텀병원 증축	둔산동	3,201.50	24,609.75
	186	둔산동 갤러리웨딩홀	둔산동	2,192.10	22,463.77
	187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증축	노은동	122,282.10	55,395.93
	188	대전 구봉지구도시개발사업	관저동	110,684.00	
	189	대전 중구 아쿠아월드 용도변경	대사동	16,384.00	10,778.79
	190	건양대학교 증축(어린이집 등)	관저동	172,717.90	26,641.74

자료 : 대전시 내부자료

구 분		사업명	위 치	대지면적(㎡)	연면적(㎡)
2015	191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천동	162,945	323,639.00
	192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외 1개소 건립	장동	81,904.43	52,449.44
	193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사업 건립공사	신동	952,066.00	130,846.21
	194	대전 중구 아쿠아리움 용도변경	대사동	16,384.00	10,778.79
	195	대전 보건대학교 증축(유아교육센터)	가양동	56,040.00	85,332.17
	196	홈플러스 동대전점 용도변경	용전동	8,852.90	4534.44

자료 : 대전시 내부자료

2. 대전시 건축·교통통합심위원회 심의실적(2009~2016)

구 분		사업명	위 치	대지면적(㎡)	연면적(㎡)
2009	1	용두동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용두동	18,886.00	40,715.83
	2	대전무역회관	월평동	2,680.00	37,633.44
2010	3	라파엘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평동	7,364.56	61,227.63
	4	봉명동 일반호텔 신축공사	봉명동	8,780.24	137,134.61
2011	5	노은4지구 도시개발사업 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지족동	51,185.00	144,207.56
	6	늘사랑교회 노은예배당 신축공사	지족동	6,078.70	19,822.22
	7	만년동 주차빌딩 신축공사	만년동	2,382.30	22,220.49
	8	금강 풍림아이원 아파트	석봉동	32,444.11	108,953.19
	9	봉명동 복합건축물	봉명동	4,763.20	71,651.16
	10	대성동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성동	21,311.00	60,354.74
	11	도룡동 업무시설	도룡동	5,414.40	42,166.81
2012	12	탄방동 오피스빌딩 신축	탄방동	3,713.80	34,574.55
	13	문화동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문화동	6,773.56	28,112.99
	14	대정동 판매시설 증축공사	대정동	17,293.60	16,136.06
	15	대정동 청남가구단지 신축공사	대정동	19,385.70	26,085.74
	16	도룡동 골프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도룡동	30,376.40	35,393.29
	17	둔산동 유통시설 신축공사	둔산동	5,602.90	87,640.41
2013	18	유성구 관평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평동	6,610.90	54,751.20
	19	용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용두동	35,568.00	111,952.45
	20	스마트시티 호텔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도룡동	11,149.30	70,594.39
2014	21	복수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복수동	66,340.60	169,045.91
	22	유성 관평동 쇼핑센터 신축공사	관평동	7,361.59	59,146.33
	23	관평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평동	3,746.30	38,647.47
	24	둔산동 유통시설 신축공사	둔산동	5,602.90	85,224.15

자료 : 대전시 내부자료

구 분		사업명	위 치	대지면적(㎡)	연면적(㎡)
2014	25	봉명동 레자미 주상복합 신축공사	봉명동	3,578.90	32,024.87
	26	유성구 도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도룡동	14,268.30	132,950.40
	27	대전 탄방동 쇼핑센터 증축공사	탄방동	3,890.20	28,554.63
	28	스마트시티 호텔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도룡동	11,149.30	62,005.14
	29	판암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내 A1,A2 BL공동주택신축	판암동	51,745.50	166,196,47
	30	판암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내 A3 BL공동주택신축	판암동	13,003.20	42,968.88
	31	구즉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봉명동	47,261.00	132,310.71
	32	복용동 자동차매매장 신축공사	복용동	41,385.00	99,960.73
2015	33	유성구 원신흥동 문화시설(예식장) 신축공사	원신흥동	12,990.00	9,188.56
	34	대전 관저4지구 30블록 공동주택신축공사	관저	44,360.60	151,176.86
	35	용운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용운	91,827.00	286,246.00
	36	유성구 테크노벨리 오피스텔&호텔 신축	관평동	3,764,80	43,958,80
	37	봉명동 매드블럭 신축공사	봉명동	3,440.90	17,230.82
	38	학하지구 3블럭 오투그란데 리빙포레 신축	학하동	38,874.00	125,103.30
	39	유성구 관평동 1356번지 오피스텔 건축	관평동	6,610.90	47,394.96
	40	유성구 관평동 1345번지 오피스텔 건축	관평동	7,432.40	52,793.45
	41	오류동00주상복합 신축공사	오류동	4,595.20	56,523.34
	42	관저동 복합문화시설 신축공사	관저동	5,010.40	25,766.02
	43	대전 반석동 00공동주택 신축공사	반석동	35,498.40	95,674.90
	44	유성구 대정동 판매시설 증축공사 / 모다아울렛	대정동	17,293,6.00	22,226,85
	45	갈마동 315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갈마동	9,555.31	43,824.15
2016	46	대전 서광감리교회 신축공사	도안동	3,613.80	14,073.99
	47	법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법동	68,749.60	211,313.61
	48	둔산중앙침례교회 신축	도안동	4,304.20	13,201.45
	49	대전 선화동 한신 휴 공동주택 신축	선화동		55,219.57
	50	도룡동 00오피스텔 신축공사	도룡동	4,633.70	45,103.52

자료 : 대전시 내부자료

구 분		사업명	위 치	대지면적(㎡)	연면적(㎡)
2016	51	대전 자동차 종합 유통 복합센터 신축공사	구도동	30,319,30.00	68,708,89.00
	52	도마·변동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도마동	73,578.00	262,439.84
	53	대전시 관저4지구 41블럭 공동주택 신축(약식)	관저동	46,100,9.00	153,009.22
	54	대전 석봉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	석봉동	33,974.00	110.201.78
	55	대전 반석동 00공동주택 신축공사	반석동	35,520.00	99,529.80
	56	탄방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탄방동	32,124.30	120,213.63
	57	대전 학하지구 A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덕명동	30,671.50	98,734.27
	58	대전 용전동 근생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공사	용전동	1,929.70	21,401.89
	59	대전 레전드호텔 증축 및 대수선공사	봉명동	2,853.70	33,364.88
	60	대전신흥재정비촉진지구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신흥동	103,347.00	215,430.61

자료 : 대전시 내부자료

참고문헌

국토교통부(2014),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기준 재정립 연구
건설교통부(2006), 교통영향평가제도 대체방안 연구
국토해양부(201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표준매뉴얼
서울시(2017),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 설명회 자료
서울시(2017),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